

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3758
----------	------

제 안 연 월 일 :2026년 6월 22일
제 안 자 :서울특별시의회
2027서울세계청년대회
(WYD) 지원 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5조)
- 나. 시장이 시설 설치 및 유지·관리, 안전관리, 질서유지, 환경정비, 교통·숙박·급식 등 편의 지원, 자원봉사 활동 지원,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및 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~안 제8조)
- 라. 숙박·급식, 행사장, 교통, 안전 및 위생의료, 문화·관광, 자원봉사자, 대회 관련 시설, 청년단체 활동, 홍보 및 안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~안 제17조)
- 마.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)

바.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청년들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고,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세계청년대회”란 2027년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세계청년대회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
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
4.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
5. 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 등 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6.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계청년대회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2.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, 질서유지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
3.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·숙박·급식 등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자원봉사자 모집·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5.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,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구성 등)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개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,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, 자치구,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세계청년대회 지원단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시 관련 부서와 공기업 및 출자·출연 기관과의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계청년대회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단은 숙박·시설, 급식, 안전, 위생의료, 교통, 문화관광, 행정 지원 등 분야별 관련 부서·기관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지원단에 분야별 추진 지원을 위한 분과를 둘 수 있다.

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숙박·급식 지원) ① 시장은 시 내 숙박 및 급식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, 교육청, 자치구,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계청년대회 참가자 숙소 및 급식시설의 확보를 지원한다.

② 시장은 교육청, 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게 안전한 대규모 급식 공급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.

③ 시장은 교육청, 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숙박 시설과 해당 시설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해당 시설 또는 해당 시설 주변에 화장실, 세면장, 샤워장, 식수대 등 적정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행사장 지원)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세계청년대회 행사장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지원한다.

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집결과 해산 시 행사장의 안정적인 인파 관리를 통해 세계청년대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시장은 행사장 또는 행사장 주변에 화장실, 식수대, 무더위쉼터 등 적정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교통 지원)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행사장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 편의 대책을 마련하고,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.

② 시장은 행사장 주변의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.

제12조(안전 및 위생의료 지원) ① 시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 및 치안 관련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,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및 행사장 주변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.

② 시장은 폭염·폭우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의료체계를 마련한다.

제13조(문화·관광 지원)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에게 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 안내를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한다.

제14조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, 이를 지원한다.

제15조(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) ① 시장은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 및 개축·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청년단체 활동 지원)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홍보 및 안내)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경제 활성화 기여) 시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시민의 일자리 창출,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

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